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7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 제안이유

-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 기획재정업무담당국장, 도시업무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 환경보전이나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환경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많았었는데 동 조례가 제정되면 부천시의 환경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는가?○ 그동안 운용되어 오던 환경보전기금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환경보전기금위원회 임기가 4월에 만료되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동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보전기금위원회 조례는 폐지할 계획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131호
의결 년월일	2007. 7. 19 (제137회)

제출년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 37조에 따라,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다. 위원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 기획재정업무담당국장, 도시업무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 환경보전이나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 기획재정업무담당국장, 도시업무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과 환경보전이나 국토·도시계획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

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